[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공고 2026-168]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사업 」
2027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참신하고 의욕적인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1월 24일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조건

분야	근무장소	인원	채용기간	근무일	근로시간	급여 및 복지 수준
1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2명	2027. 1. 1. ~ 6. 30.	주 5일	일 8시간/ 주 40시간	- 월급: 2,422,310원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지급

※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지, 근무일, 휴일 및 근무시간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임금지급: 월급(월 1회, 익월 10일 이내 지급)

▌기타사항: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수당 및 휴가 부여

2. 채용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공통	「아래 공통 자격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연 령: 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하 - 거 주 지: 공고일 1일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자격기준: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기타사항: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결격 사유

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시행내규 제11조(기간제 근로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3.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제3호 관련)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점사항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시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원본제출, 보훈관청 발급)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원본제출, 시/군/구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확인서(원본제출, 통일부 또는 시/군/구 민원실 발급)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한 가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원본 제출)
의상자 및 의사·상자 배우자 및 자녀	본인- 의상자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 - 의사·상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제출, 시/군/구 민원실 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제출,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시/군/구 민원실 발급)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원본제출,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시/군/구 민원실 발급

※ 2가지 이상의 가산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중 유리한 가산점수 1가지만 적용됩니다.

직원채용 시험가산점수 기준

<table>
<tr><th>구 분</th><th>대 상</th><th>가산점수 및
부가점수</th><th>비 고</th></tr>
<tr><td rowspan="6">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td><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및 보호 대상자</td><td>각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td><td rowspan="8">•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산

•1인이 1개 이상의 가산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산점이 높은 1개만 적용함.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td></tr>
<tr><td>「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td><td rowspan="2">전형별 만점의 5%</td></tr>
<tr><td>「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td></tr>
<tr><td>「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td><td rowspan="3">전형별 만점의 3%</td></tr>
<tr><td>「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td></tr>
<tr><td>「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td></tr>
<tr><td rowspan="2">사회적 약자 및
취업취약계층</td><td>「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td><td rowspan="2">전형별 만점의 3%</td></tr>
<tr><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td></tr>
</table>

※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모집 단위(직렬, 직급)별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만 가점 부여함. 단, 예외적으로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 수가 채용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준용)

3. 채용일정

추진기간	추진내용	비고
’26. 11. 24.	채용 공고(10일 이상)	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26. 11. 30. ~ 12. 8.	원서 접수(5일 이상)	방문접수(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또는 E-mail
’26. 12. 11.(한)	서류접수 결과발표, 면접시험 일정공고	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26. 12. 21.(한)	서류전형 적격심사: 13:00(예정)	한석봉체육관 지하 1층 회의실
	면접심사(14:00 예정)	
’26. 12. 24.	합격자 발표	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27. 1. 1.	근무시작	근로계약 체결 등

※ 추진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원서 접수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6. 11. 30.(월). ~ 12. 8.(화) / 09:00 ~ 18:00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mail(pmsue@gpfmc.or.kr) 접수
접 수 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53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제출서류	□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면접(당일) 시 구비 서류: 응시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자격요건 중 거주지 확인용)

※ 구비서류는 반드시 공단 소정(채용공고)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공단 홈페이지(www.gpfmc.or.kr) → 알림방 → 채용정보 → 2027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간제근자 채용공고

5. 채용절차 및 방법

채용절차

1) 1차 서류심사: 응시 자격 기준 부합 여부 심사(적격 여부)

○ 제출서류: 가점서류(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 제출서류 참조)

2) 2차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면접심사 평가항목: 100점 / 각 항목 당 2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점수	심사 기준					비고
		매우우수 (17~20)	우수 (13~16)	보통 (9~12)	미흡 (5~8)	매우미흡 (1~4)	
합계	100						
고객지향 및 공익추구 자세	20						
창의성	20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20						
직무 전문성	20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보통(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항목에 대하여 미흡(8점) 이하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동점자 발생 시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합격기준) 제3항에 따름

※ 주의사항: 블라인드 면접으로 응시자의 개인 신상 발언 금지(친·인척 중 유명인사 또는 고위직,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학력, 사회경력 등 의도적 전달 행위)

합격자 결정

구 분	내 용
발표일자	□ 2026. 12. 24.(목)
합격결정	□ 면접시험 결과(100% 반영, 동점자 발생 시 가산점 반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동 점 자 처리기준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 제3항 기준에 따름
비 고	□ 채용 결과 발표 후 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제도에 의한 추가 채용

예비 합격자 제도 운영

구 분	내 용
운영근거	□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의2(예비합격자 제도)
운영목적	□ 신속한 인원 보충 및 결원율 최소화
예비합격자 임용결정	□ 차 순위 합격자부터 점수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하고, 공단의 내·외부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함.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예비 합격인원	□ 분야별 채용 인원의 2배수

합격자 발표: 공단 홈페이지(www.gpfmc.or.kr)채용 공고 발표

※ 합격자 및 불합격자 개별 문자 또는 유선 통보 예정.

※ 근로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6. 고용의 해고

최종 합격 후 근무태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시행내규 제47조(고용의 해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의 해고가 될 수 있음.

1.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출·퇴근 시간 및 근무태도의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지적 당하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1월 결근일수 합계가 7일 이상인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공단의 운영에 손해를 끼친 때
5.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여 입사하거나 직위(급)을 사칭한 때
6. 사회통념상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공금의 횡령·유용 또는 향응을 받거나 배임한 때(금액의 제한은 없음)
8.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9. 허가 없이 공단 안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집회 등에 참여한 때
10. 공단의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때
1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1년 이내에 직장 복귀를 할 수 없게 된 때

1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
13. 근무지변경 등 업무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종 한 때
14. 이사장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한 때
15. 형사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16.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결과 취업의 부적격자로 판정된 때
17. 사업운영상 부득이 감원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18. 공단 취업규정 제11조를 위반 하였을 때
19.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7. 기타 유의사항

□ 인사청탁, 제출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후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접수마감 후 제출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합니다.(채용 여부가 확정 된 날 이후 90일까지 청구 기간이며 청구 시 14일 이내 반환됨.) 또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공고합니다.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우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인 합격 인원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 본 공고 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문의: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채용담당자(☎031-8078-8120)